
2026학년도 화성의과학대학교 수시모집 요강



※ 본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확정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

구분	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요약 및 변경사항	☐ 간호학과 면접고사 폐지 ☐ 정원내 기회균형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 첨단학과(바이오헬스케어학과) 증원분에 대한 편입학 여석의 부족으로,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에서 여석 부족에 따른 4명을 모집인원에서 감축 ☐ 간호학과 일반전형 지원자는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며,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2개 영역 등급 합이 10등급 이내 ☐ 고등학교 이수 계열과 상관없이 모든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 (인문사회↔자연과학 교차지원 가능)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의 해당 모집단위로 이월하여 선발함	
학과구조 개편 및 모집인원 변경	2025학년도 기준(구)	2026학년도 기준
	의료경영학과(20)	변경사항 없음
	경찰과학수사학과(30)	변경사항 없음
	의료사회복지학과(16)	변경사항 없음
	의료심리학과(25)	변경사항 없음
	미래디자인학부(35)	서비스디자인학과(21)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16)
	데이터사이언스학과(20)	변경사항 없음
	간호학과(40)	변경사항 없음
	의생명과학과(30)	변경사항 없음
	바이오헬스케어학과(22)	바이오헬스케어학과(33)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과(15)
		태권도학과(15)

2026학년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계 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정원외	이월인원	모집인원
인문사회 계열	의료경영학과	20		1	21
	경찰과학수사학과	30	3	1	34
	의료사회복지학과	16		1	17
	의료심리학과	25		1	26
	서비스디자인학과	20		1	21
자연과학계열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0		1	21
	간호학과	40	10		50
	의생명과학과	30		1	31
	바이오헬스케어학과	36		1	33
예·체능계열	스포츠과학과	15			15
	태권도학과	15		1	16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15		1	16
합계		282	13	10	301

※ 첨단학과(바이오헬스케어학과) 증원분에 대한 편입학 여석의 부족으로,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에서 여석 부족에 따른 **4명**을 모집인원에서 감축

2026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 집 인 원	수시모집						소 계	정시모집						소 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학생부 교과				수능 일반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학생부교과			
		학생부 교과	기회 균형	전공관련 우수자	농어촌	특성화 고교	가치생 수급자 등			기회 균형	전공관련 우수자	농어촌	특성화 고교	가치생 수급자 등	
의료 경영학과	21	18						18	3						3
경찰과학 수사학과	34	26	2		3			31	3	-		-			3
의료사회 복지학과	17	12	2					14	3	-					3
의료 심리학과	26	20	3					23	3	-					3
서비스 디자인학과	21	16	2					18	3	-					3
데이터사이 언스학과	21	16	2					18	3	-					3
간호학과	50	30			4	2	4	40	10			-	-	-	10
의생명 과학과	31	25	3					28	3	-					3
바이오헬스 케어학과	33	30						30	3						3
스포츠 과학과	15	10	2					12	3	-					3
태권도학과	16	2	1	11				14	1	-	1				2
라이프스타 일테크학과	16	12	1					13	3	-					3
합계	301	217	18	11	7	2	4	259	41	-	1	-	0	-	42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9.8.(월) 9:00 ~ 9.12.(금) 19:00까지	■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서류제출	2025.9.8.(월) ~ 9.19.(금)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중앙로 400-5 화성의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는 평일 9:00~18:00 중에만 접수 ※ 태권도학과 실기/실적고사 평가자료 포함
합격자 발표	2025.12.12.(금) 이전 (예상 2025.11.5.(수))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	2025.12.15.(월) ~ 12.17.(수)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는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통을 본 대학 입학홍보처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함. - 주소: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중앙로 400-5 화성의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
충원 합격 발표	2025.12.18.(목) ~ 12.23(화) 18시까지	■ 최초 합격자 중 본 대학 등록포기자(등록기간 전에 포기의사 표현)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단위별 결원은 충원합격후보자 중에서 그 순위에 의거 충원합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함
충원 합격 등록 (예치금 납부)	2025.12.18.(금) ~ 12.24(수) 22시까지	
등록금 납부	2026.2.3.(화) ~ 2.5.(목)	

※ 합격통지서 및 예치금 납부고지서는 합격자 발표기간에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전형 기간 중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자는 본 대학교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상기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26학년도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학생부 교과 전형	[정원내]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내] 기회균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에 해당) ① 장애인 등 대상자 / 농어촌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특성화고교졸업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② 국가보훈대상자 ③ 서해 5도 학생 ④ 자립지원 대상자 ⑤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⑥ 만학도					
	[정원외] 농어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본인 및 부모 거주) ②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본인만 거주해도 가능)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					
	[정원외] 특성화고교	-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 동일계로 인정된 자 (단, 동일계 인정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기준학과 <table><tr><th>모집단위</th><th>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th></tr><tr><td>간호학과</td><td>간호학과, 보건간호학과 등</td></tr></table> ※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간호학과	간호학과, 보건간호학과 등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간호학과	간호학과, 보건간호학과 등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어야 함						
실기/ 실적고사	[정원내] 전공관련우수자 특별전형	□ 실기/실적고사 <table><tr><th>모집단위</th><th>지원요건</th></tr><tr><td>태권도학과</td><td>- 태권도 1단(품) 이상인 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출결점수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불가</td></tr></table>		모집단위	지원요건	태권도학과	- 태권도 1단(품) 이상인 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출결점수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불가
모집단위	지원요건						
태권도학과	- 태권도 1단(품) 이상인 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출결점수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불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불가자만 해당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해당사항 없음)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불가자만 해당
농 어 촌 학 생	공통사항	-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 입학원서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 이수자	-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 기간 동안 주소 이전 내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 기간 동안 주소 이전 내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부모 이혼가정	-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모) 또는 부모 사망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또는 - 기본증명서 1부
서 해 5 도 학 생	공통사항	- 서해5도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 입학원서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 이수자	-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 기간 동안 주소 이전 내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 기간 동안 주소 이전 내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부모 이혼가정	-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모) 또는 부모 사망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또는 - 기본증명서 1부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졸업자 동일계열 학교장 확인서

특 성 화 고 등 을 졸 업 한 재 직 자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재직자 (창업·자영업자 포함)	재직기간 증명	-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기간 전부) 1부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2개 이상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전·현 직장의 증명서 모두 제출
		4대보험 가입 증명 [1개 이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기간 전부)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해당기간 전부) 1부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	-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읍, 면, 동장발행)등)	
	장애인 등 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기준) 1부
		차상위계층 (택 1)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자립지원 대상자 (택 1)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 입소사실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발급) 각 1부 -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부, 모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1부	
	전공관련 우수자 특별전형 (태권도학과)	- 태권도 1단(품)증 1부 - 영상평가 자료 ※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	

[정원내] 학생부교과전형(일반전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료경영학과	18
경찰과학수사학과	26
의료사회복지학과	12
의료심리학과	20
서비스디자인학과	16
데이터사이언스학과	16
간호학과	30
의생명과학과	25
바이오헬스케어학과	30
스포츠과학과	10
태권도학과	2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12
총계	217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간호학과 일반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적용(수능성적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10등급 이하)

□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석차등급)	학교폭력 조치사항	총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전형 총점에 반영 (정량+제한)	900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1~7호는 전형 총점에서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정원내] 학생부교과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찰과학수사학과	2
의료사회복지학과	2
의료심리학과	3
서비스디자인학과	2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
의생명과학과	3
스포츠과학과	2
태권도학과	1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1
총계	18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에 해당)
- ① 장애인 등 대상자 / 농어촌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특성화고교졸업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② 국가보훈대상자
- ③ 서해 5도 학생
- ④ 자립지원 대상자
- ⑤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⑥ 만학도

구분	상세 지원자격
장애인 등 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다.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 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농어촌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1: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본인 및 부모 거주) 나. 유형2: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본인만 거주해도 가능)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 동일계로 인정된 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단, 동일계 인정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기준학과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th>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th></tr> </thead> <tbody> <tr> <td>데이터사이언스학과</td><td>정보컴퓨터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등</td></tr> <tr> <td>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td><td>미용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류과, 문화콘텐츠과 등</td></tr> </tbody> </table>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정보컴퓨터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등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미용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류과, 문화콘텐츠과 등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정보컴퓨터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등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미용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류과, 문화콘텐츠과 등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14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가~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원서접수 시 재직중이어야 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사·도 교육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는 포함함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재직자 ·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받은 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재직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재직자 ※ 본교는 야간 및 주말반 등 별도 반이 없으므로 일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함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단, 참전유공자 제외) 다.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라.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서해 5도 학생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형1: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나. 유형2: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자립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자녀
만학도	- 만 30세 이상인 자(입학연도(2026년) 3월 1일 기준)

□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석차등급)	학교폭력 조치사항	총점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전형 총점에 반영 (정량+제한)	900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1~7호는 전형 총점에서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정원내] 실기/실적고사 [전공관련우수자 특별전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태권도학과	11
총계	11

□ 지원자격

- 태권도 1단(품)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계 고교 출신자는 출결에 대한 점수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불가

□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실기 및 실적고사	학생부 (석차등급)	학교폭력 조치사항	총점
태권도학과	일괄합산	80%	20% (교과18%+출결2%)	전형 총점에 반영 (정량+제한)	900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실기/실적고사 방법

유형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영상평가	평가항목의 기술 영역 1~4 (각 180점)	① 숙련도(45점) ② 완성도(45점) ③ 표현성(45점) ④ 예술성(45점)	품새, 격파, 아크로바틱 기술 영역에서 자유롭게 4종류를 구성하여 영상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비교과영역(출결상황) 반영 방법(출결 2%)

출결(결석일수)	3일 이하	4 ~ 6일	7 ~ 9일	10일 이상
환산점수	18점	15점	12점	9점

- 미인정(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당 1일로 계산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1~7호는 전형 총점에서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정원외] 학생부교과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찰과학수사학과	3
간호학과	4
총계	7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본인 및 부모 거주)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이 거주하는 유형(본인 거주)
 -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
 -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석차등급)	학교폭력 조치사항	총점
경찰과학수사학과	일괄합산	100%	전형 총점에 반영 (정량+제한)	900
간호학과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1~7호는 전형 총점에서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정원외] 학생부교과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간호학과	2
총계	2

□ 지원자격

-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 동일계로 인정된 자
(단, 동일계 인정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간호학과	간호학, 보건간호학 등

※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

※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석차등급)	학교폭력 조치사항	총점
간호학과	일괄합산	100%	전형 총점에 반영 (정량+제한)	900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1~7호는 전형 총점에서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정원외] 학생부교과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간호학과	4
총계	4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어야 함

□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석차등급)	학교폭력 조치사항	총점
간호학과	일괄합산	100%	전형 총점에 반영 (정량+제한)	900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1~7호는 전형 총점에서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표

교과	과목
국어	고전, 고전문학, 고전문학감상, 고전문학의감상과비평, 국어, 국어Ⅰ, 국어Ⅱ, 국어생활, 논술, 독서, 독서Ⅰ, 독서논술, 독서생활, 독서와문법, 독서와문법Ⅰ, 독서와문법Ⅱ, 독서와의사소통Ⅰ, 독서와의사소통Ⅱ, 매체언어, 매체와문학, 문법, 문예창작전공실기, 문장론, 문학, 문학Ⅱ, 문학, 문학개론, 문학사, 문학의이해, 소설창작, 소설창작입문, 시창작, 시창작입문, 언어논술, 언어탐구, 작문, 현대문학, 현대문학감상, 현대문학의감상과비평, 화법, 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Ⅱ, 화법과작문, 희곡창작
영어	공통영어, 기초영어, 실무영어,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독해와작문, 실용영어회화, 심화영어, 심화영어독해Ⅰ, 심화영어독해Ⅱ, 심화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작문, 심화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Ⅰ, 심화영어회화Ⅱ, 영어, 영어10-a, 영어10-b, 영어Ⅰ, 영어Ⅱ, 영어강독, 영어권문화, 영어권문화Ⅰ, 영어권문화Ⅱ, 영어독해, 영어독해Ⅰ, 영어독해Ⅱ, 영어독해와작문, 영어문법, 영어문법Ⅰ, 영어작문,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영어청해, 영어회화,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수학	고급수학,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고급수학의기본, 공통수학, 기초수학, 기하와벡터, 미분과적분, 미적분Ⅰ, 미적분Ⅱ, 미적분과통계기본, 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수학Ⅰ, 수학Ⅱ, 수학연습Ⅰ, 수학연습Ⅱ, 수학의활용, 실용수학, 심화수학,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 응용수학, 이산수학, 인문수학, 자연수학, 적분과통계, 향상수학, 확률과통계
사회	경제, 경제지리, 경제학개론, 공통사회, 국사, 국제경제, 국제경제Ⅰ, 국제경제Ⅱ, 국제관계와국제기구, 국제문제,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정치Ⅰ, 국제정치Ⅱ, 국토지리, 근대한국사, 도덕,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법과정치, 비교문화, 비교문화Ⅰ, 비교문화Ⅱ, 사회, 사회·국사, 사회·문화, 사회과학방법론, 사회문화, 사회문화연구, 사회철학, 사회탐구, 생활경제, 생활과윤리, 세계문제, 세계사, 세계역사의이해, 세계이해, 세계지리, 시민윤리, 역사, 역사탐구, 윤리와사상, 윤리탐구, 인간과사회, 인간발달, 인간사회와환경, 인류의미래사회, 인문지리, 일반사회, 전통윤리, 정치, 지리탐구, 지역이해, 한국근·현대사, 한국문화사, 한국사, 한국의사회와문화, 한국의전통문화, 한국의현대사회, 한국지리, 현대생활과윤리
과학	고급물리, 고급생명과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화학, 공통과학, 과학, 과학Ⅱ, 과학과수학, 과학사및과학철학, 과학실험, 과학융합, 과학철학, 물리, 물리Ⅰ, 물리Ⅱ, 물리실험, 생명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생명과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생물, 생물Ⅰ, 생물Ⅱ, 생물실험, 생활과학, 생활과학, 워크숍, 원서강독, 전자과학, 정보과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지구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지구과학실험, 화학Ⅰ, 화학Ⅱ, 화학실험, 환경과학
기타	위 5교과군을 제외한 모든 과목

※ 위 반영과목표에 기재된 교과의 과목을 기준으로 반영함

※ 위 반영과목표에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유사한 교과군으로 분류 후 반영함

※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A+, P/F, 이수 등

※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1등급, B=4등급, C=7등급의 석차등급을 부여함

※ 석차등급 반영은 일반교과목/진로선택과목/성취도평가제 과목의 구분이 아닌, 교과군에 따른 등급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일반고교(일반고/특성화고) 대상자]

□ 반영비율

구분			학년별(6과목) 등급합산	반영점수			비고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모집단위	최고 점수	6	270	360	270	입시총점의 100% 최고점수 : 900점 기본점수 : 450점
		최저 점수	54	135	180	135	
전공관련 우수자 특별전형	태권도학과	최고 점수	6	48.6	64.8	48.6	입시총점의 18% (출결점수 제외) 최고점수 : 162점 기본점수 : 81점
		최저 점수	54	24.3	32.4	24.3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전공관련우수자 특별전형 비교과영역(출결 상황) 반영 방법(출결 2%)

출결(결석일수)	3일 이하	4 ~ 6일	7 ~ 9일	10일 이상
환산점수	18점	15점	12점	9점

- 미인정(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당 1일로 계산함

□ 반영요소

모집 단위	학년	반영요소(교과성적)	
		반영 교과목수	반영교과영역
전 모 집 단 위	1학년 (30%)	지정(4)	국어 교과군 교과목 중 1개, 영어 교과군 교과목 중 1개, 학기별로 총 2개 교과목 반영
		선택(2)	국어, 영어 교과군을 중 제외한 나머지 교과군에서 학기별로 1개 교과목 반영
	2학년 (40%)	선택(6)	전 교과군 중에서 학기별로 3개 교과목 반영 (단, 학기별 1개 교과군에서 1개 교과목만 선택)
	3학년 (30%)	선택(6)	

- ①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의 성적은 각 학기별 반영 교과목의 석차등급을 학년별로 합산하여, 합산 등급별 점수를 반영한다.
- ② 수시모집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의 3학년 2학기 교과목 선택은 3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한다.
- ③ 반영교과군 과목표에 제시되지 않은 과목중 유사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④ 반영교과군 과목이 없고, 유사 교과목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 석차등급을 9등급으로 한다.
- ⑤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1등급, B=4등급, C=7등급의 석차등급을 부여한다.

※ 석차등급 반영은 일반교과목/진로선택과목/성취도평가제 과목의 구분이 아닌, 교과군에 따른 등급 반영

□ 점수산출방법

구 분		점 수 산 출 방 법
학생부가 있는 자	99년 2월 이후 졸업자	· 전학년: 반영교과목의 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목석차 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졸업예정자	· 1,2학년: 각 학년별로 반영교과목의 석차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3학년: 1학기 반영교과목의 석차등급을 2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학생부가 없는 자	98년 2월 이후 졸업자	· 1학년: 각 학기별 학년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목석차 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2,3학년: 반영교과목의 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목석차 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97년 2월 이전 졸업자	· 전학년: 각 학기별 학년석차(계열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석차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성취도 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계산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기재되어있어야 됨
- 표준화 점수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표준화점수를 아래표에 의해서 석차등급으로 환산한다.

석 차 등 급	1	2	3
표준화 점수	3.00 ~ 1.76	1.75 ~ 1.23	1.22 ~ 0.74
석 차 등 급	4	5	6
표준화 점수	0.73 ~ 0.26	0.25 ~ -0.25	-0.26 ~ -0.73
석 차 등 급	7	8	9
표준화 점수	-0.74 ~ -1.22	-1.23 ~ -1.75	-1.76 ~ -3.00

※ 표준화 점수가 3.00보다 클 경우 3.00으로, -3.00보다 작을 경우 -3.00으로 반영

※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의 표기 중 공란이거나, 표준편차가 '0' 인 경우는 산출에서 제외

□ 석차백분률의 9등급 분류표

등 급	1	2	3
평균석차백분율	~ 4%이하	4%초과 ~ 11%이하	11%초과 ~ 23%이하
등 급	4	5	6
평균석차백분율	23%초과 ~ 40%이하	40%초과 ~ 60%이하	60%초과 ~ 77%이하
등 급	7	8	9
평균석차백분율	77%초과 ~ 89%이하	89%초과 ~ 96%이하	96%초과 ~ 100%이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교 2+1체제 대상자]

□ 반영비율

구분			학년별(6과목) 등급합산	반영점수		비고
				1학년(50%)	2학년(50%)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모집단위	최고점수	6	450	450	입시총점의 100% 최고점수 : 900점 기본점수 : 450점
		최저점수	54	225	225	
전공관련 우수자 특별전형	태권도 학과	최고점수	6	48.6	64.8	입시총점의 18% (출결점수 제외) 최고점수 : 162점 기본점수 : 81점
		최저점수	54	24.3	32.4	

※ 3학년때 학교 교육이 아닌 산업현장 교육으로 학교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일반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위의 일반고교 반영방법으로 내신성적 산출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반영방법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부적격	부적격

※ 전공관련우수자 특별전형 비교과영역(출결 상황) 반영 방법(출결 2%)

출결(결석일수)	3일 이하	4 ~ 6일	7 ~ 9일	10일 이상
환산점수	18점	15점	12점	9점

- 미인정(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당 1일로 계산함

□ 반영요소

모집 단위	학년	반영요소(교과성적)	
		반영 교과목수	반영교과영역
전 모 집 단 위	1학년 (50%)	지정(4)	국어 교과목 중 1개, 영어 교과목 중 1개, 학기별로 총 2개 교과목 반영
		선택(2)	국어, 영어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군에서 학기별로 1개 교과목 반영
	2학년 (50%)	선택(6)	전 교과목 중에서 학기별로 3개 교과목 반영 단, 학기별 1개 교과군에서 1개 교과목만 선택

- ① 1학년, 2학년 교과목의 성적은 각 학기별 반영 교과목의 석차등급을 학년별로 합산하여, 합산등급별 점수를 반영한다.
- ②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및 조기 졸업예정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 ③ 반영교과군 과목표에 제시되지 않은 과목중 유사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④ 반영교과군 과목이 없고, 유사 교과목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 석차등급을 9등급으로 한다.
- ⑤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1등급, B=4등급, C=7등급의 석차등급을 부여한다.

※ 석차등급 반영은 일반교과목/진로선택과목/성취도평가제 과목의 구분이 아닌, 교과군에 따른 등급 반영

□ 점수산출방법

구 분		점 수 산 출 방 법
학생부가 있는 자	99년 2월 이후 졸업자	· 전학년: 반영교과목의 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목석차 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졸업예정자	· 1,2학년: 각 학년별로 반영교과목의 석차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3학년: 1학기 반영교과목의 석차등급을 2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학생부가 없는 자	98년 2월 이후 졸업자	· 1학년: 각 학기별 학년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목석차 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2,3학년: 반영교과목의 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교과목석차 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97년 2월 이전 졸업자	· 전학년: 각 학기별 학년석차(계열석차)백분율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학년별로 석차등급을 합산하여 해당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성취도 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계산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기재되어있어야 됨
- 표준화 점수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표준화점수를 아래표에 의해서 석차등급으로 환산한다.

석 차 등 급	1	2	3
표준화 점수	3.00 ~ 1.76	1.75 ~ 1.23	1.22 ~ 0.74
석 차 등 급	4	5	6
표준화 점수	0.73 ~ 0.26	0.25 ~ -0.25	-0.26 ~ -0.73
석 차 등 급	7	8	9
표준화 점수	-0.74 ~ -1.22	-1.23 ~ -1.75	-1.76 ~ -3.00

※ 표준화 점수가 3.00보다 클 경우 3.00으로, -3.00보다 작을 경우 -3.00으로 반영

※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의 표기 중 공란이거나, 표준편차가 '0' 인 경우는 산출에서 제외

□ 석차백분율의 9등급 분류표

등 급	1	2	3
평균석차백분율	~ 4%이하	4%초과 ~ 11%이하	11%초과 ~ 23%이하
등 급	4	5	6
평균석차백분율	23%초과 ~ 40%이하	40%초과 ~ 60%이하	60%초과 ~ 77%이하
등 급	7	8	9
평균석차백분율	77%초과 ~ 89%이하	89%초과 ~ 96%이하	96%초과 ~ 100%이하

검정고시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 반영비율

구분			검정고시 평균점수	반영점수	비고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모집단위	최고 점수	100	900	입시총점의 100% 최고점수 : 900점 기본점수 : 450점
		최저 점수	60	450	

※ 전공관련 우수자 특별전형(태권도학과)의 경우 출결 점수산정 불가로,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계 고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반영요소

- ①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평균점수를 본교 환산 방식을 이용하여 반영점수를 구하고 이를 총점으로 활용한다.
(※ 본교 홈페이지의 점수계산식 활용하여 계산가능)
- ②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순으로 취득점수를 각각 1, 2, 3학년 취득점수로 적용하여 학년별 합산등급을 구하고 이 등급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지원자 유의사항

□ 수시모집 지원 횟수 및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지원자는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 횟수로 산정함.
 -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됨.
 - 수시모집 전형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등록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

- 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예치금과 최종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수시모집에서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모집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 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부정행위 유의사항

- 입학전형에서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 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인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일반 유의사항

- 본교의 모든 전형은 계열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전형 간 복수 지원도 가능함.
- 수험생용 각종 공지사항과 합격자발표는 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원서접수 종료(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원서접수 내용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가 당해년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후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함.
- 지원 자격 부적격자, 대학별고사(실기/실적 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의 원서접수 완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온라인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학교생활기록부

- 본교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 성적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원서와 함께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함.

○ 고졸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 제공 자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 신청 절차
 -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제공 동의 확인 번호'를 입력해야 고졸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됨.
-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서류제출 마감 시한 까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2017년 1회차부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수시전형 지원자 중 당해 연도 2회차 합격자는 온라인 제공이 불가하므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구 분	유 의 사 항
합격자 선발	· 각 전형별 성적순으로 해당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 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실기/실적고사 자료 미제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모집인원 미달,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시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통지서 및 고지서도 함께 출력 가능함. ·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책임임.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함. 2학년 입시총점 ⇒ 1학년 입시총점 ⇒ 2학년 과목 수강인원합계 ⇒ 1학년 과목 수강인원합계 ⇒ 3학년 입시총점 ⇒ 3학년 과목 수강인원합계
불합격 처리	·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실기/실적고사 자료 미제출자
후보자 선발	· 합격자 및 불합격자 등을 제외한 지원자 모두를 총원합격 후보자로 선발함.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 포기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 입학전형 성적순위에 따라 총원 선발함. · 총원 합격자 개별 통보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3회 통화시까지 연락두절, 연락처 오기입 포함)은 불합격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등록 안내	· 합격자는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등록금 납부기간에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예치금 납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예치금 납부를 하였어도 추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등록포기 및 등록(예치)금환불 안내

- 본 대학교에 등록(예치)금을 환불 받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예치)금 환불신청을 해야함.
- 등록(예치)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 처리한다.
- ※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 시 구비서류
 - 1) 등록(예치)금 반환신청서(본 대학교 소정 서식) 1부.
 - 2)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

전형료

모 집 단 위	전 형 료	비 고
전체 모집단위	4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전형료 면제
전공관련우수자 특별전형 (태권도학과)	53,000원	

□ 전형료 반환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부득이하게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본교에서 인정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 자체 고사 불참(결시)자의 자체고사료(면접, 실기고사 등)는 환불하지 않음.

□ 전형료 비례 환불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이며, 전형료 반환은 본교가 공지한 반환기간에 반환함.
-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본교 직접방문 또는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중 하나를 선택함.
-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이때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장학금 안내

□ 입학장학금/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수석 합격자: 수시와 정시모집 각각 계열별 수석합격자에게는 입학 연도 두 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

- 매학기마다 직전 학기성적기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손)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 단, 입학 시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이후 학기에는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본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손)자녀) 발급가능자에 한함.

□ 교직원 가족장학금

- 교직원의 직계 자녀와 형제자매에게 장학금 지급. 단, 입학시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이후 학기에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 가족사랑 장학금

-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생 1인에게 장학금 지급. 단, 입학시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이후 학기에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 복지장학금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 단, 입학 시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이후 학기에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의 100%, 차상위계층 : 등록금의 70%)

□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단, 입학시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 하며 이후 학기에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 리더십장학금

- 학교생활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과 및 학교에 기여한 총학생회 및 학회장에게 장학금 차등 지급

□ 공로장학금

-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나 학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가. 예·체능, 문예, 학술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나. 교내·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면학장학금

- 직전학기 15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중 가정형편 및 장학금 수령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과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금 지급

□ 봉사장학금

- 교내·외 근로봉사를 위해 학과 교수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애인사랑장학금

-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국가재난지원장학금

- 국가의 특별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정의 장학금 지급

□ 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글로벌 인턴십 장학금/글로벌 어학연수 장학금/글로벌 교환학생 장학금/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금

-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인턴십 장학금 지급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금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금

-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장학금 지급
 - 가. 소속 학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자격증으로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장학금 을 취득한 자 (단, 학기당 2회에 한함)
 - 나. 소속 학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 기타 민간 자격증 중 해당 학과에서 인정하는 장학금을 취득한 자 (단, 학기당 2회에 한함)
 - 다. 전공역량강화를 위한 교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한자

□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금

-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공인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공인어학성적 장학금

- 공인어학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단, 1년에 1회에 한함)

□ 취·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금

- 재학생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취·창업지원장려 장학금

- 취·창업지원장려 장학금 및 취·창업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 가. 취·창업 박람회
 - 나. 취·창업 관련 교육 참여
 - 다. 교내·외 취·창업 관련 대회 참여
 - 라. 교내·외 취·창업 관련 대회에 입상한 자

□ 고시반 장학금

- 고시반 입반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수혜인원은 고시반 입반 정원의 20%미만으로 입반 성적 우수자 2인, 고시반 지도교수의 추천 1인으로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

□ Neo-RC 장학금

- Neo-RC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화성의과학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통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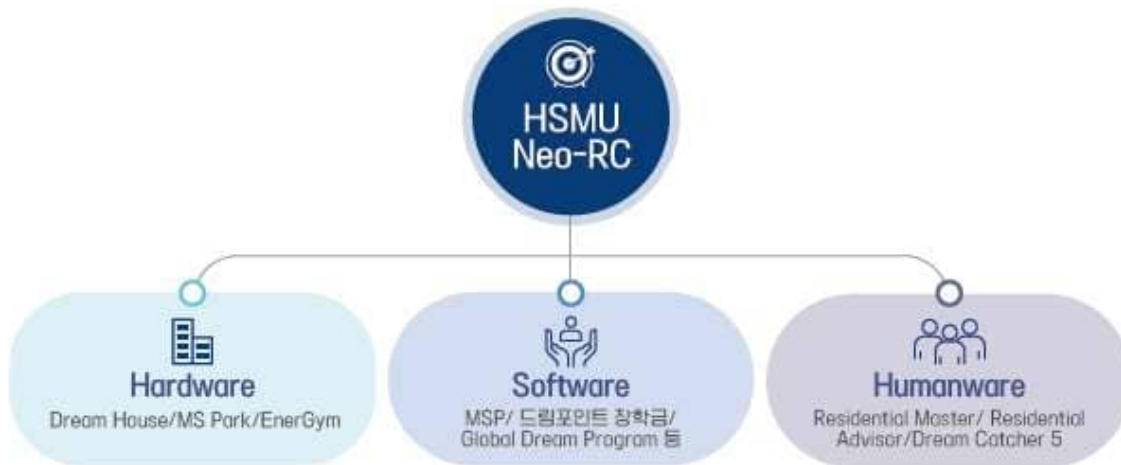
□ 외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 기타 외부 장학재단 및 사회단체, 개인이 지급 또는 위탁한 재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세상에 없던 Neo-Residential College

Neo-Residential College란?

- 학생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학습 생활 통합 인프라(별도 College로 운영)



학생 주도 자율형 프로그램

- 토론행 프로그램: Movie&Talk, Book Talk
- 체험형 프로그램: 학생 주도 원데이 클래스(에코플랜테리어, 플로깅 등)



운동 프로그램

-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명상, 태권도와 친해지기 등



명사 특강

-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대화, 특정주제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정신 건강 프로그램

- 재학생 스크리닝, 또래상담, 집단상담 등

글로벌 프로그램

-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 다문화 스포츠 컨테스트 등

국내외 현장 벤치마킹

- 국내: Dream Tour in Korea, 화성시 History Tour, 각종 박람회 참석 등
- 해외: Dream Tour in World, 태권도 시범단 해외파견(포르투갈, 독일, 일본 등)

⇒ 프로그램 참여시 드림포인트 적립하여 Neo-RC 장학금 지급



안전하고 저렴한 1인1실 풀옵션 자율형 기숙사 드림하우스

- 신입생 100% 입주 가능
- 세계최고 수준의 Residential College 운영
- 도보 3분 거리, 통학비용보다 저렴한 기숙사 사용료
- AI 기반 학습 플랫폼 (Medi-Science Park) 무료 제공
- RC 운영위원회 1대1 밀착 케어 등 안심 주거 환경 제공



* 보증금 및 임대료는 LH 임대조건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보증금	340만원
임대료	약 12만원
평수	6.6평
풀옵션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신발장, 옷장&이불장(2), 그릇장, 컴퓨터 책상, 화장실, 욕실&샤워실
위치	학교로부터 도보 3분
운영	1인 1실 자율형
운영호실	330호



드림하우스
브이로그
보러가기

특성화고교 졸업자 동일계열 학교장 확인서

지원 자	성명				
	지원학과 및 학부	학과/학부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연 락 처				
출신 고교	출신고교	고등학교			
	출신학과 (이수전공)	과			
	재학기간	년	월	입학 ~	년 월 졸업(예정)
	확인자(교사)			연락처	
지원학과별 동일계 기준학과		지원학과	특성화고교 동일계 기준학과		
		간호학과	간호과, 보건간호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정보컴퓨터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등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미용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류과, 문화콘텐츠과 등		
		※ 지원자의 출신 기준학과가 본 대학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은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 종합고교 전문계열)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열 기준학과 이수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학교장
직 인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제출 서류 양식 [농·어촌 재학 사실 확인서]

농·어촌 지원 자격 및 재학 사실 확인서

성명				모집단위	학과/학부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지원자격 (해당 항목에 V 체크 하시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1	()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본인 및 부모 거주)				
	유형2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교(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본인만 거주해도 가능)				
재학사항 (초등학교 재학사실은 유형2 해당자만 기입)	학 교 명	소 재 지			재 학 기 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거주사실 (부모의 거주사실은 유형1 해당자만 기입)	구 분	소 재 지			거 주 기 간		
	본인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모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학교장
직 인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제출 서류 양식 [서해 5도 지원 자격 및 재학 사실 확인서]

서해 5도 지원 자격 및 재학 사실 확인서

성명				모집단위	학과/학부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지원자격 (해당 항목에 V 체크 하시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1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서해 5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친권자 혹은 후견인) 모두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2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서해 5도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한 자				
재학사항 (초등학교 재학사실은 유형2 해당자만 기입)	학 교 명		소 재 지			재 학 기 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거주사실 (부모의 거주사실은 유형1 해당자만 기입)	구 분		소 재 지			거 주 기 간	
	본인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모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 균형 특별전형(서해5도 학생)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학교장
직 인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제출 서류 양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성명			모집단위	학과/학부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주소				연락처	
재직사항	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 위 · 직 급	
	재직기간	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산업체규모 (종업원수)		연 락 처	전화: () - 팩스: () -	
	산업체주소 (소 재 지)	우편번호()			
제출용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지원용		제 출 처	화성의과학대학교	
발급부서		발급자		연락처	

위 대상자는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대표자)

직 인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